

「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관리·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, 지역작가들에게는 창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안정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, 시민들에게는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 이를 위해 구미예술창작 스튜디오의 관리·운영사무의 위탁에 대한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명: 구미 예술창작스튜디오 관리·운영
- 추진근거
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 - 2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21조
 - 3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
 - 4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, 제19조의5
 - 5) 「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」 제21조
 - 6)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 - 7) 「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 - 8) 「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6조

- 위탁사무: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관리·운영
- 시설개요
 - 1) 시 설 명: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
 - 2) 소 재 지: 구미시 고아읍 황산리 47(구, 대방초등학교)
 - 3) 규 모: 연면적 1,296㎡, 대지면적 11,599㎡
 - 4) 주요시설: 작업실 8실, 체험교실 6실, 가마실 2실, 창고 등
- 위탁기간: 2025년 1월 1일 ~ 2029년 12월 31일(5년)
- 수탁자 선정방식: 수의계약[(재)구미문화재단]
- 위탁조건: 위·수탁 협약 체결에 의함
- 소요예산: 연 40,409천원 정도

(단위: 천원)

계	기간제근로자등보수	사무관리비	공공운영비	사업비	비고
40,409	3,209	17,900	16,300	3,000	

4. 참고사항

위탁시설 현황

<건축물>

층별	연면적	건축물 내역(면적 m ²)	비고
본관 1층	388.8㎡	작가별 레지던시 8실(388.8)	임차
본관 2층	388.8㎡	체험교실 4실(388.8)	
별관	259.2㎡	동창회 사무실 1실(64.8) 식당 1실(64.8) 창고 2실(129.6)	
기타	259.2㎡	화장실 2실(61.61) 가마실 2실(33.75) 체험교실 2실(92.84)	

위치도 및 조감도

□ 위치도



□ 전경

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의 관리·운영을 (재)구미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본 시설은 도자기, 한지공예 등 작가들이 전통문화를 창작하고 시민들이 전통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, 구미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운영으로 전통문화 활성화와 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현재 토·일·공휴일은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민들의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날, 연휴기간 등 특정 시기에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
- 구미에코랜드 등 인근 체험학습장과의 사업 연계 등으로 전통 공예 문화의 체험 기회를 시민들이 폭넓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체험 프로그램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